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행정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관계 행정기관	→ 검토 관계 행정기관	→ 지정 여부 결정 관계 행정기관	→ 지정증 발급 관계 행정기관	→ 통 보 관계 행정기관